#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

핫이슈 보고서

2019년 12월





# 미 상원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우선순위 원칙 발표 내용 및 관련 동향 분석

# < 목 차 >

- 1. 개요 및 배경
- 2.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우선순위 원칙
  - (1) 개요
  - (2) 내용
- 3. 기타 원칙 및 제안 사례
- 4. 미 의회의 동향
  - (1) 상원
  - (2) 하원
- 5. 시사점

#### 1. 개요 및 배경

- ▶ 미국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과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, 미 의회의 법률 제정 일정은 2020년 이후로 이월될 전망
  - EU GDPR 시행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요구 및 기술 기업들의 개인정보 이용 관행에 대한 경각심으로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제기
  - 캘리포니아소비자개인보보호법(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, CCPA) 등 주(州) 차원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<sup>1</sup> 지역별 법령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 제기

<sup>1</sup> Google, Facebook, IBM, Intel, Microsoft 등 미국의 주요 ICT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이후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알려짐



- 이런 가운데,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△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과 △미 FTC(Federal Trade Commission)의 개인정보보호 집행 권한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률 제정 절차 지연
- ▶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 상원의 4개 주요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19년 11월 18일 미국 최초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되어야할 우선 순위 원칙(Privacy and Data Protection Framework) 발표
  - 이 발표에는 △상무위원회의 Maria Cantwell 의원 △사법위원회의 Dianne Feinstein 의원 △보건·교육·노동·연금위원회의 Sherrod Brown 의원과 Patty Murray 의원이 참여
  -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 및 자원 확대를 통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와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 제시
  - 본 보고서는 △우선순위 원칙의 내용을 분석한 후 △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시된 또 다른 원칙 및 의견들과 △의회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 및 논의 동향에 대해 검토

#### 2.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우선순위 원칙

## (1) 개요

- ▶ 미 상원의 4개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법률로서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원칙을 개발
  - 의원들이 제안한 원칙은 △데이터 보호 수단의 확립 △경쟁 촉진 △소비자 및 시민의 권리 확보 △책임성 강화 등 4가지 주제로 구분
  - 이를 통해 △정보주체인 소비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, △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공유·보호와 관련한 기업과 조직의 책임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

#### (2) 내용

- ▶ 첫째, '데이터 보호 수단의 확립'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
  - (최소화) 데이터 수집은 승인된 이용 목적에 맞춰 최소화되어야 함
  - (오남용 방지) 유해하고 기만적이며 부당한 방식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해야 함



- (공유 제한) 소비자가 승인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데이터 공유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설정해야 함
- (보안) 조직이 데이터의 보유 및 보안 방법에 대해 더 높은 표준을 확보해야 함

#### ▶ 둘째. **'경쟁 촉진'**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

- (시장 지배력 점검) 기업 내의 개별 사업부 사이에서 소비자 데이터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,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제한 사항을 적용해야 함<sup>2</sup>
- (데이터 이동성) 소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회사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받아야 함

#### ▶ 셋째. **'소비자 및 시민의 권리 확보'**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

- (소비자의 권리) 소비자는 △자신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사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△이에 대한 열람·삭제·수정·제한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△온라인 데이터 추적 거부권("do-not-track" right)과 같이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수단을 보장받아야 함
- (민권 보호) 소비자는 편견이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의 결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

#### ▶ 넷째, '책임성 강화'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

- (기업의 책임성)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, 기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윤리적으로 이용하며 소비자에게 해가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
-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는 △CEO의 책임 강화 △내부 고발 권리 보장 △소비자 구제 메커니즘 등이 포함되어야 함
- (연방 차원의 집행 권한 및 규칙 제정) 미 연방거래위원회(FTC)에는 △과징금 부과 권한 △신기술 환경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각종 규칙에 대한 제정 권한 △추가적인 자원과 인력 확보가 필요함
- (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) 주(州) 법무장관의 법 집행 권한과 함께 민사소송 등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야 함
- 2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안



#### 3. 기타 원칙 및 제안 사례

- ▶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원칙이나 법안에 반영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,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견해를 제시
- ▶ 글로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싱크탱크인 CIPL(The Centre for Information Policy Leadership)은 "미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10가지 원칙(<u>Ten Principles for</u> a Revised U.S. Privacy Framework)"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('19.3월)
  - CIPL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보를 책임 있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구현되어야 할 원칙을 제시
  - 이는 ①책임성(Accountability) ②위험을 고려한 접근 방식(Risk-based Approach)
    ③투명성(Transparency) ④개인의 권한강화(Individual Empowerment) ⑤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의 구별(Controller/Processor Distinction) ⑥글로벌 상호 운용성(Global Interoperability) ⑦혁신(Innovation) ⑧감독과 스마트 규제(Oversight and Smart Regulation) ⑨효과적인 집행(Effective Enforcement) ⑩포괄적이고 조화로운 프레임워크(Comprehensive and Harmonized Framework)로 구성
  - (책임성)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과 조직이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요구해야 하며, 미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같은 책임성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함
  - (위험을 고려한 접근 방식)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정보주체가 직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 준수 조치를 조율해야 하며, 이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는 정보주체의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둔 소위 위험을 고려한 접근 방식(Risk-based Approach)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음
  - (투명성) 정보주체에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장황하고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지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상황과 대상에 맞춤화된 사용자 중심적인 새로운 표준을 설정해야 함
  - (개인의 권한강화) 새로운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'선택'과 '동의'를 통한 개인정보 통제뿐만 아니라 익명화, 개인정보 침해의 불만 처리 및 구제, 열람권과 정정권 보장과 같은 다양한 매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
  - (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의 구별)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구별을 통해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고, 통상적으로 두 역할을 구별하는 국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함



- (글로벌 상호 운용성) 해외 주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설계함으로써 서로 다른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체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해야 하며, 이를 통해 △국가 간의 안전한 데이터 이동 촉진 △지역 간 비즈니스 규제 준수 간소화 △디지털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
- (혁신)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책임 있는 데이터 이용을 위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보상해야 하며, 사회와 개인 모두를 위한 데이터 이용을 촉진해야 함
- (감독과 스마트 규제) 조직의 책임과 혁신적인 규제 정책 개발을 장려하는 등 법집행에 앞서 규제에 대한 리더십과 참여와 협력을 강조해야 함
- (효과적인 집행)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처벌이 요구되지만, 전통적인 법 집행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도 가능해야 함
- (포괄적이고 조화로운 프레임워크)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관된 규칙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지역과 산업에 관계없이 균일하고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제공해야 함
- 한편, CIPL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연방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는 입장
- ▶ 34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합 단체는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('18.11월)
  - 연합 단체가 공개한 자료(<u>Public Interest Privacy Legislation Principles</u>)에 따르면,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
    - 첫째,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해야 함
  - 둘째, 시민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데이터 관행을 확립해야 함
  - 셋째,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
  - 넷째,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을 조성해야 함
  - 이번 발표에는 △Consumers Union, △Human Rights Watch, △Center for Democracy & Technology 등 주요 소비자 보호 단체와 시민권익옹호단체들이 참여
  - 단, EFF(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)는 미국 상무부에 독자적으로 원칙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서 이번 연합 단체의 활동에서는 제외



- ▶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 EFF(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)은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제시('19.6월)
  - 첫째, 강력한 주(州) 개인정보보호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을 선점하려는 시도를 배제해야 함
  - 둘째,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
  - 셋째,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만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차별금지 규칙을 적용해야 함
  - 그 밖에도 EFF는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개선을 위해 △옵트-인 동의 방식 적용 △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△데이터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
  - EFF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 같은 요구사항들이 소기업, 비영리 단체, 오픈 소스 프로젝트 등에 대해 불공정하게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
- ▶ 정보통신기술(ICT)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(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, ITI)는 '프라이버시에 대한 상호운용성 규칙 향상 프레임워크 (Framework to Advance Interoperable Rules, FAIR)'를 발표3('18.10월)
  - ITI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의회에 지침(guidance)을 제공하기 위해 이 프레임워크를 제시
  - 기업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이해와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으로 △개인정보와 관련한 투명성 제고 △소비자의 통제권 강화 △개인정보 이용 기업들의 책임성 확보 △보안 촉진 △혁신 증진 등을 위한 일련의 원칙 수립<sup>4</sup> 등을 제시
  - 이와 함께, 동 프레임워크의 목적에 대해서는 △개인정보보호 강화 △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관계 심화 △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의 개발과 관련한 정보 제공, 그리고 △이상의 세 가지 목표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의 파편화 방지<sup>5</sup> 등 4가지를 제시
  - 미국의 FIPPs(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),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(GDPR), APEC의 CBPR(Principles and Cross Border Privacy Rules)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 프레임워크는 개인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지원
  - 그러나 ITI의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문제로부터 기술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

<sup>3</sup> https://www.itic.org/news-events/news-releases/leading-tech-group-unveils-framework-to-advance-consumer-privacy

<sup>4 &</sup>lt;a href="https://www.clarip.com/blog/iti-fair-privacy-framework/">https://www.clarip.com/blog/iti-fair-privacy-framework/</a>

<sup>5</sup> https://www.itic.org/public-policy/FINALFrameworktoAdvanceInteroperableRules%28FAIR%29onPrivacyFinal NoWatermark.pdf



- 비영리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 (Digital Democracy Center)의 Jeff Chester 사무총장은 ITI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데이터 수집주체를 위한 권리장전(Bill of Rights)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
- ▶ 미국의 기술혁신정책 전문 민간 싱크탱크 ITIF(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)는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보고서(<u>A Grand Bargain</u> on Data Privacy Legislation for America)를 발표('19.1월)
  - ITIF는 Google, Amazon, Facebook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연구 조직으로, 미 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
  -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하여, 투명성, 상호 운용성, 민감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 등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검토
  - ITIF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캘리포니아의 CCPA(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)와 같은 주(州)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
  - 또한 여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하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 확립을 위해, 보건의료 부문의 HIPAA(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)와 교육 부문의 FERPA(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) 등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<sup>6</sup>
  - 미 연방통상위원회(FTC)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, 현존하는 각 주의 법률과 연방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
  -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언론의 자유·생산성·미국경제의 경쟁력·혁신과 같은 다양한 가치와 목표들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ITIF의 보고서는 미 상원 민주당의 원들의 입장에 비해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

#### 4. 미 의회의 동향

#### (1) 상원

▶ 미 상원에서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비공개 토론과 입법 제안 속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

6 https://hub.packtpub.com/itif-along-with-google-amazon-and-facebook-bargain-on-data-privacy-rules-in-the-u-s/



-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여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자의 법안을 준비해왔지만, 그러한 제안 중 특별히 주목을 끌거나 표결이 실시된 사례는 전무
- 상무·과학·교통위원회 소속의 Roger Wicker 위원장과 Jerry Moran, Richard Blumenthal, Brian Schatz 의원 등이 FTC의 권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입법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논의가 중단
- Roger Wicker 위원장은 민주당의 Maria Cantwell 의원과 새로운 법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, Cantwell 의원은 개인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한과 FTC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
- Blumenthal 의원과 Moran 의원은 FTC에 더 많은 집행 권한을 부여하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소비자의 고소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
- 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법사위원회 기술 TF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권고안 작성을 추진 중이며, 해당 TF의 제1차 회의에는 다수의 기술 기업들이 참여해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데이터 이용 문제와 FTC의 권한 강화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
- Ron Wyden 상원 의원은 FTC 권한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'Mind Your Own Business Act' 법안을 제출

#### (2) 하원

- ▶ 하원의원들도 각각 개인정보보호 법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한 상황
  - 민주당의 Anna Eshoo 의원과 Joe Lofgren 의원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보호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침해 기업에 대한 소송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회람
  - 하원 에너지·상무 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소위원회 의장인 민주당의 Jan Schakowsky 의원은 2019년 말을 목표로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

## 5. 시사점

▶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,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



- 연방 차원의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 부재로 인해 민간 부문을 규율하는 다수의 연방 및 주 법률에 의존해야 하는 점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 및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미국 개인정보보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한 주(州)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대한 소송 문제 등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
- 그러나 미국 사상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의 CCPA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
- 2019년에도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준비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 사례가 없지 않았던 만큼 2020년 미 의회가 오랜 의견 대립을 넘어 거대 기술기업들의 로비와 정보주체의 권한강화 요구 사이에서 실질적인 법률 제정을 위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

#### Reference

- 1. Bank Info Security, "New US Federal Privacy Bill Proposed", 2019.11.28.
- 2. Bloomberg, "Bipartisan Senate Quartet in Talks on Data Privacy Bill", 2018.8.29
- 3. Bloomberg, "Lawmakers Are Far Apart on Privacy Bill Despite Pressure to Act", 2019.8.16.
- 4. CNBC, "A federal privacy law is starting to crystallize, but Democrats and Republicans can't agree on how to do it", 2019 12 4
- 5. ITIF, "A Grand Bargain on Data Privacy Legislation for America", 2019.1.14.
- 6. Lexology, "CIPL Issues White Paper on Principles for a Revised U.S. Privacy Framework", 2019.3.21.
- 7. Multichannel News, "Comprehensive House Privacy Bill Introduced", 2019.11.5.
- 8. Reuters, "Republican privacy bill would set U.S. rules, pre-empt California: senator", 2019.12.3
- 9. Reuters, "U.S. online privacy rules unlikely this year, hurting big tech", 2019.9.30.
- 10.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, "EFF's Recommendations for Consumer Data Privacy Laws", 2019.6.17.
- 11. The Hill, "Advocates draw battle lines over national privacy law", 2018.11.13.
- 12. The Hill, "Advocates urge senators to work with consumer groups on privacy law", 2019.7.19.
- 13. The Hill, "Senate Democrats unveil priorities for federal privacy bill", 2019.11.18.
- 14. The Hill, "Senators inch forward on federal privacy bill", 2019.12.4.





발행 일 2019년 12월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(301-2) Tel 061-820-1946

- ▶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- ▶ 해외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,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.